

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3. 1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9일 · 김성은 의원외 7인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김 성 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단장 · 지휘자 · 반주자에 대한 위 · 해촉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단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 (안 제4조제1항)
-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 (안 제4조제2항)
- 운영위원회 구성 (안 제7조)
 -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
 -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
 -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 1인,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
 - 위촉직 위원 임기 2년

○ 운영위원회 심의사항

(안 제8조)

-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단장, 지휘자, 반주자 위·해촉에 관한 사항
-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김성은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